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2017. 12

김세중 · 김유미

머 리 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으며, 개인형 IRP 및 개인연금에서는 중도해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사적연금 또한 은퇴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사적연금의 최소연금 수령 기간이 단기인 점은 장기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해외 각 국은 사적연금 관련 제도 및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연금수령 기간 확대, 행동변화 유도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평가해 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사적연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험산업이 점증하는 노후보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
2. 선행연구 / 13
3. 연구의 구성 / 15

II. 사적연금 현황과 한계점 / 16

1. 사적연금 제도유형별 특징 / 16
2. 사적연금 장기연금화의 어려움 / 20

III.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 / 25

1. 해외사례 / 25
2. 설문조사 결과 / 36

IV. 사적연금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49

1. 연금수령 의무화에 대한 평가 / 49
2. 대응방안 / 50

V. 결론 및 시사점 / 57

| 참고문헌 | / 60

| 부록 | / 63

부록 I. 행동변화 요소 효과 설문 문항 / 63

■ 표 차례

- 〈표 Ⅱ-1〉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 17
- 〈표 Ⅱ-2〉 연령별 개인형 IRP 가입자 현황 / 18
- 〈표 Ⅱ-3〉 연령별 개인연금 신계약 비중 추이 / 19
- 〈표 Ⅱ-4〉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 21
- 〈표 Ⅱ-5〉 DC형 퇴직연금 중도해지 규정 / 22
- 〈표 Ⅲ-1〉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중 / 25
- 〈표 Ⅲ-2〉 각 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 시 세제 / 35
- 〈표 Ⅲ-3〉 일시금 선호 응답자 특성 분포 / 38
- 〈표 V-1〉 사적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제고방안 / 59

■ 그림 차례

- 〈그림 I-1〉 우리나라의 3층형 노후보장 체계 / 11
- 〈그림 I-2〉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 / 12
- 〈그림 II-1〉 사적연금 시장구조 변화 / 20
- 〈그림 II-2〉 국가별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23
- 〈그림 II-3〉 사업체 규모별 평균 근속기간 / 23
- 〈그림 III-1〉 프레이밍 효과 / 30
- 〈그림 III-2〉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의 효과 / 30
- 〈그림 III-3〉 High-Low 옵션 1 / 32
- 〈그림 III-4〉 High-Low 옵션 2 / 32
- 〈그림 III-5〉 정기인출과 거치연금의 혼합 효과 / 34
- 〈그림 III-6〉 정기인출과 즉시연금의 혼합 효과 / 34
- 〈그림 III-7〉 연금선택 응답자의 선택 연금수령 기간 / 38
- 〈그림 III-8〉 부분 일시금 선택 시 연금선택 비중 / 39
- 〈그림 III-9〉 부분 일시금 선택 시 선택 연금수령 기간 / 40
- 〈그림 III-10〉 디폴트 연금수령하의 연금선택 비중 / 41
- 〈그림 III-11〉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선택 비중 변화 / 42
- 〈그림 III-12〉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수령 기간 비중 변화 / 42
- 〈그림 III-13〉 혼인 여부에 따른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선택 비중 변화 / 44
- 〈그림 III-14〉 혼인 여부에 따른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수령 기간 비중 변화 / 44
- 〈그림 III-15〉 연령별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선택 비중 변화 / 45
- 〈그림 III-16〉 연령별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수령 기간 비중 변화 / 46
- 〈그림 III-17〉 성별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선택 비중 변화 / 47
- 〈그림 III-18〉 성별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수령 기간 비중 변화 / 47
- 〈그림 IV-1〉 연금수령액 예시 / 52

A Study on policies to encourage long-term annuitization in private pension plans

Private pension plans including DB/DC/IRP and tax-qualified annuity should supplement public pension system because retirees don't secure enough retirement income only through public pension . However, Private pension plans in Korea have several problems to function effectively as additional retirement income source.

First, most retirees take lump-sum in DB/DC pension plans. The percentage of retirees who take annuity is just 1.6% in 2016. Second, it is very easy to withdraw fund reserve in IRP pension plans, and lapse rate is very high in tax-qualified annuity despite tax penalty. Third, retirees prefer short-term annuity to long-term or life annuity.

We analyze other countries' case and conduct survey about how people change their decision to annuitize with behavioral elements such as partial lump-sum, default annuitization option and framing.

We suggests three policies to encourage long-term annuitization in private pension plans. First, annuity option should be the default in DB/DC/IRP pension plans, and DB/DC/IRP pension plans should allow partial lump-sum option and use framing technique. Second, private pension plans should allow higher tax benefit for retirees who choose long-term annuity. Third, IRP pension plans should block fund reserve withdrawal and, all private pension plans should endeavor to increase rate of return.

These policies can effectively help private pension plans function as additional retirement income source, and can be a comprehensive action plan for the polity authority.

요 약

I. 서론

-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을 통한 보완이 절실함
 - 사적연금이라 불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제도임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이후 40%를 유지할 계획이나, 현실적인 가정 도입 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기대보다 악화됨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하는 사적연금의 종합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는 주로 의무연금화 또는 일시금 인출 비율 제한 등의 강제화 정책 도입, 연금상품 개발 및 혼합지급방식 허용, 연금수령 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함
 - 기존 선행연구들은 종합적인 접근보다는 나열식의 대안 제시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가입자의 행동요소(Behavioral Elements) 변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
 -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의무연금수령 기간이 각각 5년과 10년으로 종신 연금에 비해 매우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임

II. 사적연금 현황과 한계점

- 향후 DB형 퇴직연금의 기업체 부담 등으로 DC형 퇴직연금 비중 확대가 전망되며,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형 IRP 확대가 예상되나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혜택 변화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5년 말 기준 소기업(29인 이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도입 비중(60.5%)이 높고, 대기업(300인 이상)은 DB형 퇴직연금 도입 비중(78.7%)이 높게 나타남
 - 개인형 IRP는 2017년부터 공무원, 가정주부 등 거의 전국민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규모 확대가 예상됨
 -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 일시금 형태로 수령되면서 추가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임
 - 2016년 기간 중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240,718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6%(3,766좌)에 불과함
 - 류건식(2017)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87%가 연금을 선호함에도 실제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퍼즐(Annuity Puzzle)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 선호 원인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역사가 짧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많고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지적됨

- 개인형 IRP 계좌는 해지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적립금의 이탈이 발생하기 쉽고, 개인연금은 높은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해지율이 높은 수준임
 - 적립금 규모는 연금수령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적연금

적립금의 이탈방지 및 수익률 제고 또한 장기연금수령 유도에 중요한 요소임

- 사적연금 중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금지되어 있음
-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연금 재원이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되지만, 개인형 IRP 계좌는 해지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적립금의 이탈이 발생하기 쉬움
- 오영선(2014)은 개인연금 상품을 해지한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가 40%로 나타나며, 높은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이 노후소득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개인연금의 최소연금지급 기간은 10년이며 퇴직연금의 의무연금수령 기간도 5년으로 단기이므로 종신연금에 비해 노후소득 확보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짐
 -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연금의 확정금액형 수령 시 평균 수령 기간은 6.4년에 불과하여 의무수령 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의 경우 종신수령이 가능한 생명보험회사의 적립금 비중이 20%대로 낮고 의무연금수령 기간도 5년으로 개인연금에 비해 짧기 때문에 평균적인 연금수령 기간이 개인연금에 비해 단기일 것으로 예상됨

Ⅲ.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

1. 해외사례

- 해외 각 국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 및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Huitron(2014)은 연금수령 비중이 높은 나라로 스위스, 칠레, 영국(의무연금화 폐지 이전), 네덜란드 등을 꼽았으며, 연금수령 비중 차이는 각 국가의 연

금제도 및 문화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임

-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등은 은퇴자의 행동요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부분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시 목돈지출에 대응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시금수령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는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대규모 일시금 인출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정도는 다르지만 다양한 인출상품을 제공함
- 연금선택 행동에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대표적으로 스위스, 덴마크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두 국가는 전액 일시금수령이 가능한 국가이나 연금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스위스는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 프레이밍(Framing), 조기 의사결정 방식 등 다양한 행동요소 변화방안들을 사용함
 - Bockweg et al.(2016)은 네덜란드 퇴직연금 펀드에서 프레이밍과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가 연금수령 유도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많은 국가에서 은퇴 초기 목돈에 대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분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제공함
- 부분 일시금수령을 허용하는 경우 일시금 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일시금 비중을 25% 또는 30%로 제한하는 경우 등 다양함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부분 일시금수령이 불가능하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후후박형(High-low Income Streams) 연금을 제공함
 - 칠레와 싱가폴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제도(Free-disposal Surplus)를 운영함
- 주로 일시금수령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 다양한 상품을 수령 방식으로 제공

하고 있으며, 연금수령을 일부 강제화하는 국가에서는 제한적인 상품을 제공함

- 호주, 미국, 영국(연금수령 의무화 폐지 이후) 등의 국가는 장수 위험, 투자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수령 방식으로 제공함
- 연금수령을 일부 강제화하고 있는 칠레,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제한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제측면에서는 일시금수령 시 높은 세부담으로 연금수령을 유도하며, 이직 혹은 퇴직 시 적립금이 이전되는 개인퇴직계좌의 인출을 제한함

- 많은 국가에서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하며, 소득세는 누진 세이기 때문에 대규모 일시금수령 시 패널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이직 혹은 퇴직 시 적립금이 이전되는 미국의 전통형 IRA 계좌, 일본의 확정각출연금 제도는 중도인출을 엄격히 금지함

2.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에서의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함

- 설문결과 80.5%의 응답자가 연금수령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9.5%만이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많은 응답자들이 연금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 본 보고서는 일시금수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과 관련한 응답을 분석함

■ 설문 결과 연금과 일시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수령 방식을 은퇴자에게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은퇴자의 연금 비중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수령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부분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나 명시적으로 은퇴자에게 제안하지는 않고 있음
 -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응답자 429명에게 연금과 일시금을 20% 단위로 혼합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연금수령 비중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혼합수령 시의 평균연금비율은 23.2%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종신과 20년이 33.7%, 32.6%로 높게 나타남
- 디폴트 연금수령 방식과 프레이밍 또한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연금수령 유도에 효과가 있었음
-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일시금수령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질문한 경우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응답자 429명 중 14.9%의 응답자가 수령방법을 변경하지 않았음
 - 프레이밍을 사용한 경우 28.6%의 연금수령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프레이밍 효과가 없을 때에 비해 5.4%p 증가한 수치임
 - 프레이밍은 연금수령 선택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수령 선택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문장을 읽도록 한 후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수령 비중을 결정하도록 설계됨
 -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20년 이상의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한 비중은 91.0%에서 92.6%로 1.6%p 증가함
- 응답자 특성을 혼인 여부,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 활용 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미혼인 경우에 행동요소 변화방안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은 본인 이외의 소득원이 없어 노후소득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결과임

-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20대 또는 30대의 저연령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연금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수령 선호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임
- 여성에 있어서 부분 일시금 허용 시 평균연금비율이 크다는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노후소득 니즈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그러나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례 설문조사의 10개 문항만을 추가하여 실시한 설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함

- 설문대상을 은퇴 직전인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음
- 프레이밍 효과 분석 시 비교군과 대조군을 나누지 못하고 동일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반복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소 타당성이 낮을 수 있음
- 은퇴자의 수령 방식 선택에는 은퇴자산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은퇴자산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았음

IV. 사적연금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디폴트 연금수령과 부분 일시금 두 가지 방안을 혼합하는 전략을 통해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가입단계에서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지정한 후, 수령단계에서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액 연금을 수령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은퇴자에게는 다시 일시금 비중 20~100%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 디폴트 연금수령 도입 대신 스위스의 경우처럼 사적연금수령 방식 결정을 조기에 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할 경우 은퇴자의 수령 방식 선택은 연금상품의 만족도

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후후박형 연금, 체감형 연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프레이밍 또한 연금수령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연금교육과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연금수령 비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금수령의 장점과 일시금수령의 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 후 은퇴자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
- 20대와 30대의 저연령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연금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수령 선호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임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은퇴시점에서 예상되는 적립금 규모의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에 적립금 총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연금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금수령 유도가 가능함

■ 개인연금 가입 시 의무 연금기간과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수령 시 의무 연금기간 선택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여 연금수령 기간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개인연금 가입자가 가입시점에서 본인의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 등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11.2%, 13.2%, 15.2%, 17.2% 등으로 차등화함
-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 시점에서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 등으로 선택하는 경우 각각 퇴직소득세의 70%, 60%, 50%, 40% 수준으로 세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사적연금의 적립금이 축적되는 적립단계에서도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립금 유출방지 및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투자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펀드(TDF, Target Dated Fund)와

같이 소득목표에 따른 자산운용이 필요함

- 개인연금의 유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계약을 장기 유지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 패널티를 부과함
- 개인형 IRP의 적립금 증대를 위해서는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V. 결론 및 시사점

- 해외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제시함
 - 첫째, 가입단계에서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며, 연금수령의 장점과 일시금수령의 단점을 충분히 설명함
 - 둘째, 연금수령 기간 장기화를 위해 연금수령 기간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함
 - 셋째, 적립금 유출방지와 수익률 제고방안을 도입하여 적립금 확대를 통한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함
- 이와 같은 사적연금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은 사적연금을 DC형 및 DB형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개인연금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계 등 모든 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임

〈요약 표 1〉 사적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제고방안

구분	가입	적립	수령
DB형	디폴트 연금수령	예상 연금수령액 정보 제공	• 소득흐름에 맞는 연금상품 추가 • 부분일시금 + 행동요소 변화 • 연금수령 기간별 세제지원 차등화 (퇴직소득세의 70%, 60%, 50% 등)
DC형		소득목표에 따른 자산운용(TDF 등)	
개인형 IRP	최소 연금기간 선택, 세제혜택 차등 (5, 10, 20년, 종신)	해지 패널티 부과	
개인연금		유지 인센티브 (수수료 경감, 추가 이자, 포인트 지급)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형 노후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적연금이라 불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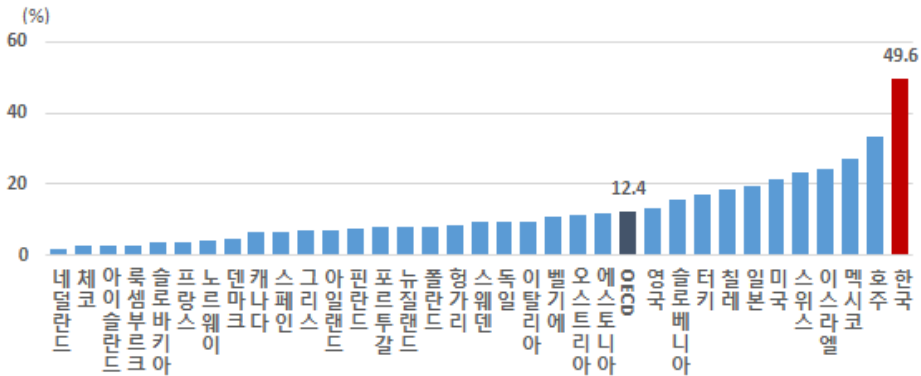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2008년 50%에서 하향조정하여 2028년 이후 40%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대환·오병국(2011)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현실적인 근로연수를 감안하여 실제 가입기간을 27년으로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5.8~3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승희·손현섭·이항석(2014) 또한 생존기간을 고려한 생애 소득대체율을 남성 19.3%, 여성 25.7%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기대보다 악화됨을 의미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을 통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1〉 우리나라의 3층형 노후보장 체계



한편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¹⁾을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에 비해서도 4배 가량 높다. 우리나라와 소득대체율이 유사한 국가들인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높은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 및 사적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 -2〉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



자료: OECD(2016), "Pension at a glance"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의 경우 수령 방식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장기연금 형태의 수령 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연금수령 기간도 장기간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각종 가입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적연금 적립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을 위해 축적된 은퇴자산이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되어 노후소득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사적연금의 도입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1) 노인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인구 / 총 노인인구) × 100으로 계산되며,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함

본 보고서에서는 은퇴자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적립금을 장기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의 수령 방식을 결정하는 수령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입단계와 적립단계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사적연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적연금 적립금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사적연금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적연금 적립금을 장기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수적인 주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개발연구원(2014)은 종합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적연금 장기보유 및 연금수령 유도방안과 관련하여 장기 유지 시 수수료 할인, 담보대출 활성화, 연금수령 시 세제 경감,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상품다양화, 은퇴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2015)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부로 연금수령 유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증형, 체감형 연금, 프로그램 인출 등의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노후준비수준을 고려한 일시금 조건부 허용, 단순한 구조의 디폴트연금 도입, 주택연금 활성화, 종합소득세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류건식(2014)은 고령친화형 상품 개발, 디폴트 연금수령, 부분연금수령, 프로그램 인출 방식 도입, 세제혜택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류건식·김동겸(2015)은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이 연금수령 의무화보다는 자율적 연금수령 유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립금의 일부분만을 일시금으로 허용하는 방안, 일시금과 연금의 혼합, 연금상품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세창(2012)은 설문조사를 통해 일시금 선호 현상이 세제와 목돈 선호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연금수령 시의 세제가 일시금수령에 비해 유리할 경우 일시금수령에

서 연금수령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48.9%라는 결과를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세체계하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수급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보다 일시금이 세제상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일정 한도까지 일시금수령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이 일시금수령보다 유리한 세제구조를 통해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방안과 연금소득 공제한도 확대를 제안하였다.

고용노동부(2012)는 연금제도 간 역할분담 방안을 다루면서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유도방안으로 프로그램 인출방식 도입, 국민연금 수급 시까지 가교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2013)은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를 통해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유도를 위해 일시금수령에 대한 퇴직소득세 공제축소 등 세부담 확대를 주장하였고, 세부담 확대의 효과는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열·류건식(2017)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일시금 선호 현상의 원인이 제도 도입 역사가 짧고 소액계좌가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연금화에 대한 약한 세제 인센티브로 인해 향후에도 일시금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세율 인상, 일시금 인출 요건 강화 등은 제도적 불확실성 회피를 위한 근로자들의 동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수준에 불확실성이 없도록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을 연구한 이경희(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경희는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의무 연금전환 정책,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 세제개편을 통한 연금화 유인 제공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부분 연금전환 허용, 정보 제공 및 교육,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첫째, 의무연금화 또는 일시금 인출 비율 제한 등의 강제화 정책 도입, 둘째, 프로그램 인출, 고연령 거치연금 등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 및 혼합지급방식 허용 등 수령 방식 다양화, 셋째, 일시금수령에 대한 세제부담 확대 및 연금수령 시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세제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각자가 제시한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보다는 나열식의 대안 제시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주로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논의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수령 방식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요소(Behavioral Elements) 변화에 대한 논의는 디폴트 연금수령 방안 등에 국한하여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사적연금 연금수령 유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금수령 기간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의무연금수령 기간이 각각 5년과 10년으로 종신연금에 비해 매우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연금수령 유도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기간을 장기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하는 사적연금의 포괄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각 유형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계좌(IRP) 및 개인연금의 가입자 특성과 시장 변화를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에 고려하며, 수령 단계뿐만 아니라 가입단계, 적립단계 등 각 단계별 활용 가능한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가입자 행동요소 변화방안을 제시하고 해외사례와 설문조사를 통해 기대효과를 평가해 보도록 한다.

3. 연구의 구성

본 보고서는 2장에서 사적연금 제도 유형별 특징과 장기연금화의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해결방안 탐색을 위하여 해외사례와 함께 행동요소 변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구체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제안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사적연금 현황과 한계점

1. 사적연금 제도유형별 특징

가.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하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 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퇴직연금 형태이며,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여 스스로 관리하는 퇴직연금 형태이다. 두 퇴직연금 제도의 수령단계 선택방식은 동일하며,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 기간이 5년 이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고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15년 말 기준 소기업(29인 이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도입 비중(60.5%)이 높고, 대기업(300인 이상)은 DB형 퇴직연금 도입 비중(78.7%)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DB형 퇴직연금이 이직률이 낮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은퇴 시 수령 가능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장기인 대기업의 경우 적립금의 유출없이 장기연금수령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 의사 결정을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 시 적립금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적립단계에서의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중소기업 가입자가 많은 특성 때문에 이직과 퇴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유출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단위: 개소)

사업장 규모	DB 단독 도입	DB, DC 동시 도입	DC 단독 도입	기업형 IRP 도입	합계
10인 미만	45,175	1,575	106,941	32,475	186,166
10인 ~ 29인	27,894	2,516	50,730	-	81,140
30인 ~ 99인	12,093	1,849	14,636		28,578
100인 ~ 299인	3,552	1,127	2,650		7,329
300인 ~ 499인	552	278	287		1,117
500인 이상	551	549	235		1,335
합계	89,817	7,894	175,479	32,475	305,665

자료: 고용노동부(2016a)

나.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이다. 자영업자 및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2017년부터는 공무원, 가정주부 등 거의 전국민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수령단계 선택방식은 DB형 및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나 연금수령 시 가입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만 다르다.

2015년 기준 이직과 퇴직으로 인해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한 금액은 약 10.7조 원이며, 개인형 IRP 계좌에서 해지로 인해 인출된 금액은 약 9.5조 원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직과 퇴직에 의해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에서 개인형 IRP로 이전된 적립금의 대다수가 해지되어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형 IRP 가입자는 30대와 40대 비중이 60%를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노후소득 재원 누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II-2〉 연령별 개인형 IRP 가입자 현황

(단위: 명, 억 원, %)

연령	계		남자		여자	
	가입자	적립금액	가입자	적립금액	가입자	적립금액
합계 (구성비)	747,226 (100.0)	108,335 (100.0)	476,833 (100.0)	91,589 (100.0)	270,393 (100.0)	16,745 (100.0)
20대	63,864 (8.5)	1,194 (1.1)	24,511 (5.1)	405 (0.4)	39,353 (14.6)	789 (4.7)
30대	213,897 (28.6)	8,282 (7.6)	124,746 (26.2)	4,008 (4.4)	89,151 (33.0)	4,274 (25.5)
40대	244,086 (32.7)	20,774 (19.2)	161,791 (33.9)	14,968 (16.3)	82,295 (30.4)	5,807 (34.7)
50대	184,827 (24.7)	49,637 (45.8)	135,783 (28.5)	45,300 (49.5)	49,044 (18.1)	4,337 (25.9)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19)

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특별한 가입 조건이 없으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한 사적연금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적립액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 은행은 신탁, 증권은 펀드, 보험은 보험상품 형태로 가입한다. 수령방법 선택방식은 가입 후 5년 경과,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고,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와 달리 이연된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시금수령에 대한 패널티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패널티를 통해 개인연금의 경우 어느 정도 연금수령의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연금의 최소 연금수령 기간은 10년이며, 생명보험 상품은 종신연금이 가능하고 손해보험상품은 최대 25년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하에서는 최소 연금수령 기간이 5년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퇴직연금과의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연금수령 기간 단축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개인연금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감소하는 동시에 개인연금의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볼 때 장기간 노후대비를 해야 할 30~40대의 가입률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3〉 연령별 개인연금 신계약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대	18.8	16.3	14.8	14.2
30대	29.1	26.1	20.7	19.7
40대	30.1	29.7	24.5	24.8
50대	15.8	16.8	17.5	19.5
60대	2.5	2.7	5.4	6.4

자료: 보험개발원(2014)

라. 사적연금 시장 전망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혜택 변화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는 중소기업의 DC형 퇴직연금 선호, DB형 퇴직연금의 기업체 부담 등으로 DC형 퇴직연금 비중 확대가 전망되며, 이직 및 퇴직에 의한 적립금 이동,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납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개인형 IRP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설계에 있어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혜택 대상금액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유지율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연금수령 시 지급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II-1〉 사적연금 시장구조 변화



2. 사적연금 장기연금화의 어려움

가. 퇴직연금의 일시금 편중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 일시금 형태로 수령되고 있으며, 부족한 공적 연금을 보완할 추가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6년 기간 중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240,718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6%(3,766좌)에 불과하며, 퇴직급여 수령액 기준으로는 전체 5조 7,617억 원 중에서 20.3%(1조 1,701억 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었다.

류건식(2017)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87%가 연금을 선호함에도 실제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퍼즐(Annuity Puzzle)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시금 선호 이유로는 아파트 구입 등의 목돈마련(53.8%)이 가장 높고, 다양한 연금상품 부족(17.9%), 낮은 연금액(1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전과 은퇴 시 연금선택에 있어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은퇴 시 가까운 미래에 가중치를 둬으로써 노후소득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실제 60세 남녀가 일시금 연금상품에 2억 원의 목돈을 납입하는 경우 종신연금(확정기간 10년) 월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연 2.5%의 복리를 가정했을 때 남성과 여성 각각 73만 원, 50만 원으로 나타난다.²⁾ 은퇴자

2) S생명 홈페이지 상에서 계산된 일시금 종신보험 보장금액임

의 입장에서 2억 원이라는 당장의 목돈 가치에 비해 미래에 종신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50~70여 만 원의 가치는 0.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수령액은 1,938만 원으로 연금수령 계좌 평균 수령액 (3억 1,070만 원)의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일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수령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열·류건식 (2017)도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 선호 원인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역사가 짧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소액인 경우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액도 소액일 수밖에 없으며, 소액의 연금수령액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를 위해서는 적립금 증대도 중요한 요소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적립 단계에서의 인출제한, 수익률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수령 선호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지적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퇴직소득세가 경감되나, 일시금수령 시의 실효 퇴직소득 세율이 3%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70% 수준의 퇴직소득세 경감 혜택은 연금수령 인센티브로서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표 II-4〉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좌, 억 원, %)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합계	
계좌 수	금액	계좌 수	금액	계좌 수	금액
3,766(1.6)	11,701(20.3)	236,952(98.4)	45,916(79.7)	240,718(100.0)	57,617(100.0)

자료: 금융감독원(2017. 5)

나. 사적연금 적립금의 이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립금 규모는 연금수령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립금이 적을수록 노후소득보다는 목돈 지출에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

는 것이다. 또한 정원석(2017)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으면 연금수령 시 얻게 되는 세제혜택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적립금의 크기가 연금수령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 적립금의 이탈방지 및 수익률 제고 또한 장기연금수령 유도에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금지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개인연금 및 개인형 IRP 추가납입 분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 분을 공제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적립금의 이탈을 막고 있다.

〈표 II-5〉 DC형 퇴직연금 중도해지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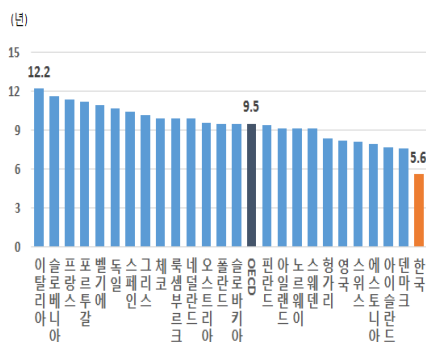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에 따른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연금 재원이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되지만, 개인형 IRP 계좌는 해지가 매우 자유롭기 때

문에 적립금의 이탈이 발생하기 쉽다.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되는 경우 환급받은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적립금의 인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5년 근로자의 이직 또는 퇴직으로 개인형 IRP 계좌에 이전된 금액 중 약 10% 만이 노후소득 재원으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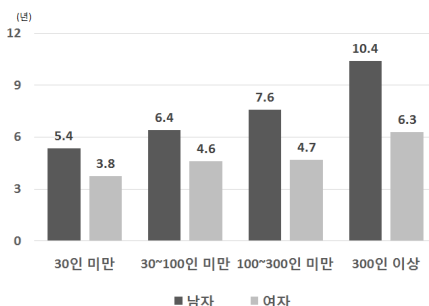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³⁾는 2015년 5.6년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짧은 근속연수를 감안하면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인출 제한의 효과는 반감된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속연수가 짧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근속연수가 짧다.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은 개인형 IRP의 해지가 용이하다는 점과 맞물려 저소득 근로자가 노후소득 관점에서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림 II-2〉 국가별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자료: 고용노동부(2016b)

〈그림 II-3〉 사업체 규모별
평균 근속기간



자료: 고용노동부(20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혜택분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해지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오영선(2014)은 개인연금 상품을 해지한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가 40%로 나타나며, 높은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이 노후소득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패널티 외에도 개인연금의 유지율을 높일

3)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조사대상 기준일까지 근무한 기간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 단기의 연금수령 기간

개인연금에 최소연금지급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신연금에 비해 노후소득 확보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특히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 이외에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경우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10년 이상의 장기수령보다는 단기수령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⁴⁾ 연금저축 수령 시 확정기간형이 전체 보유계약의 5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종신행이 33.9%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미지정(7.1%), 확정금액형(1.6%), 혼합형(0.1%)의 순서로 수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수령액 중 업권별 비중을 살펴보면 종신연금을 통한 종신행 수령이 불가능한 신탁과 펀드 비중이 각각 32.1%, 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정금액형 수령 시 평균 수령 기간은 6.4년에 불과하여 의무수령 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경우 관련 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개인연금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신수령이 가능한 생명보험회사의 적립금 비중이 20%대로 낮고 의무연금수령 기간도 5년으로 개인연금에 비해 짧기 때문에 평균적인 연금수령 기간이 개인연금에 비해 단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지적하였듯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개인연금법하에서는 개인연금의 의무연금수령 기간도 5년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확보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무연금수령 기간을 보다 장기로 확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퇴자가 스스로 장기의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 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Ⅲ.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

1. 해외사례

가. 국가별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중

Huitron(2014)은 OECD 주요 8개국의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중을 비교 분석하였다. Huitron은 연금수령 비중이 높은 나라로 스위스, 칠레, 영국(의무연금화 폐지 이전), 네덜란드 등을 꼽았으며,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을 연금수령 비중이 낮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덴마크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Ⅲ-1〉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중

국가	연금수령 정도	연금수령 비중(%)	소득대체율(%)	
			남성	여성
호주	낮음	2~10	60.2	55.5
칠레	높음	70	45.5	36.6
덴마크	중간	50	83.7	83.7
네덜란드	매우 높음	100	91.4	91.4
싱가폴	낮음	36	38.5	34.4
스위스	높음	80	58.4	57.6
영국	높음	80	37.9	37.9
미국	낮음	2 이하	41.0	41.0

자료: Huitron(2014)

이러한 연금수령 비중 차이는 각 국가의 연금제도 및 문화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이다. 스위스는 퇴직연금의 평균적인 연금수령 비중이 80%에 달하며, 퇴직연금제도

에 따라 다양하지만 최소 연금수령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연금수령 비중이 높다. Butler, M. and Teppa, F.(2007)는 스위스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기능이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중이 높은 이유는 금융에 있어 보수적이고 종신 소득흐름을 선호하는 스위스 근로자들의 문화적 태도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칠레 또한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중이 높은 나라이며, 이는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인출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칠레의 경우 정규 은퇴 나이에 은퇴하는 경우 연금수령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조기은퇴의 경우에는 연금수령 비중이 100%에 육박한다.⁵⁾ 칠레의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연금시장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고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Rocha et al.(2011)은 칠레의 경우 적립단계와 수령단계의 산업이 분리되어 있어 적립단계의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에만 집중하며, 수령단계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마케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기인출의 경우에도 계리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상품과 정기인출의 차별성을 희석시켜 정기인출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영국의 경우 2015년 퇴직연금 의무연금화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연금화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였으나 의무연금화제도 폐지 이후 연금화 정도가 크게 하락하였다. 정원석(2017)에 따르면 제도변화 이후 영국의 연금수령 비중은 10%대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정기인출(Drawdown)⁶⁾ 비중이 10% 이하에서 28%로 증가하고 일시금수령 비중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퇴직연금의 의무연금화를 통해 100%의 연금수령률을 유지하고 있다.

Huitron(2014)은 호주의 경우 은퇴 시 주택대출 잔고가 많은 편이고 은퇴자들이 자산 유동성에 강한 선호를 보이는 점이 낮은 연금수령 비중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

5) Huitron(2014)

6) 정기인출(Drawdown)은 퇴직연금 펀드의 적립금을 유지하면서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를 의미함

으며, 류건식·김동겸(2015)은 뉴질랜드나 호주는 연금자산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투자수익에만 부과되는 특성으로 연금수령 시의 세제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과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유인이 강하다는 점을 낮은 연금수령 비중의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사적연금이 강제화되지 않고 수령 방식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의 일시납 수령 비중이 높은 호주나 미국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노후 빈곤율 수준이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우리나라의 높은 노후 빈곤율은 퇴직연금수령 방식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가 많지 않고, 퇴직연금은 도입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도 낮고 퇴직연금의 일시납 수령 비중이 높은 호주는 우리나라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노후 빈곤율이 높은 나라이다. 미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DB형 퇴직연금의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계좌의 일시납 수령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전반적인 노후 빈곤율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싱가폴은 독특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은퇴 시 적립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나 연금수령 비중이 높지 않다. 이는 싱가포르의 경우 적립단계에서 사망보험 또는 소득보상보험, 고액의 의료비용, 주택구입, 교육 등과 관련한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있으며, 수령단계에서 최소 요구 적립금(Minimum Required Balance)을 충족한 은퇴자만 강제 연금수령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Asher, M. (2013)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45%만이 최소 요구 적립금 기준을 충족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덴마크의 경우 퇴직연금의 다양한 수령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 비중이 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기인출과 일시금이 각각 35%, 1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퇴직연금 관련 제도 및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국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

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등은 은퇴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부분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시 목돈지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세제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시금수령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는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대규모 일시금 인출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정도는 다르지만 다양한 인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사례는 우리나라와 제도 및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각국의 특징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행동요소(Behavioral Elements) 변화방안

은퇴자들의 연금선택 행동에 변화를 유도하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스위스, 덴마크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두 국가는 전액 일시금수령이 가능한 국가이나 연금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⁷⁾ 스위스의 경우 특별한 변동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령 방식 선택 전에 연금선택 시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 선택 시의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프레이밍(Framing), 수령 방식 선택을 은퇴 시점보다 먼저 하도록 함으로써 수령 방식 의사결정 시 미래에 대해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조기 의사결정 방식 등 다양한 행동요소 변화방안들을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대부분의 퇴직연금 펀드가 일시금, 연금 혹은 혼합방식의 선택을 제공하지만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Butler, M. and Teppa, F.(2007)는 이러한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가 은퇴자의 연금선택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연금을 투자수단이 아닌 생존기간 동안 소비흐름을 창출하는 수단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레이밍(Consumption Frame)을 통해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로 설정된 연금수령을 일시금수령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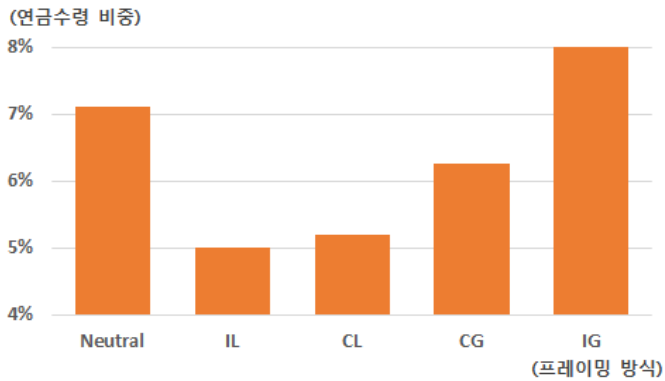
7) Huitron(2014)

하기 위해서는 은퇴시점 3년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러한 조기 의사결정은 소비자가 장기적인 미래를 수령 방식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스위스와 유사한 행동요소 변화방안들이 적용되고 있다.

연금선택에 있어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요소들 중 프레이밍은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구된 바 있다(Agnew et al 2008; Beshears et al 2014; Brown et al 2013).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적립금 수령 방식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Bockweg et al.(2016)은 네덜란드 퇴직연금 펀드에서 프레이밍이 수령 방식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네덜란드는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강제화되어 있지만 이들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부 일시금수령이 가능한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비율을 답하게 한 뒤(일시금수령 비중 0%, 5%, 10%, 15%, 20% 중 선택) 다양한 프레이밍과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동 연구에서 프레이밍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설명은 첫째, 일시금수령과 연금수령 선택이 노후소득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여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부각한 경우(CG: Consumption Gain), 둘째,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노후소득이 불충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한 경우(CL: Consumption Loss), 셋째, 투자와 관련된 언어로 일시금수령 비중을 줄일 경우 연금수령액 증가로 연간 성과가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설명한 경우(IG: Investment Gain),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된 언어로 일시금수령 비중을 높일 경우 연금수령액 감소로 연간 성과가 어떻게 낮아지는지를 설명하는 경우(IL: Investment Loss)이다.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경우 응답자들의 평균 일시금수령 비중은 7.1%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 가지 프레이밍하에서는 일시금 인출 증가로 인한 투자손실 프레이밍(IL)에서 가장 낮은 5.0%의 일시금 인출 비중을 보였고, 일시금 인출 감소로 인한 투자이익 프레이밍(IG)에서는 오히려 중립인 경우에 비해 8.0%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금 선택에 의한 소득보장 약화 프레이밍(CL)과 연금수령에 의한 소득보장 강화(CG)는 모두 중립인 경우보다 낮은 각각 5.2%, 6.2%의 일시금수령 비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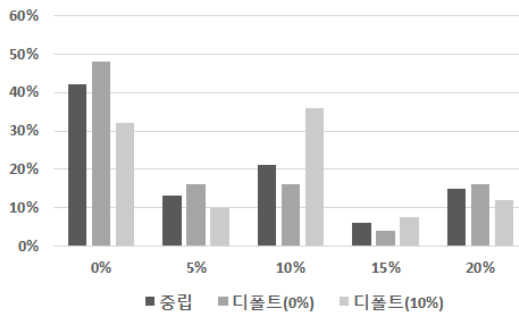
〈그림 Ⅲ-1〉 프레이밍 효과



자료: Bockweg et al, (2016)

동 연구는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의 효과도 살펴보고 있는데 응답자가 특별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연금화하도록 하는 경우 일시금수령 비중은 6.1%로 낮아짐을 보였다.

〈그림 Ⅲ-2〉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의 효과



주: 디폴트(0%)는 전액 연금수령이 디폴트인 경우이고 디폴트(10%)는 90% 연금수령이 디폴트인 경우임

자료: Bockweg et al, (2016)

한편 주소현·윤재민(2014)은 연금화 의사결정에 있어 닷 내리기 효과(Anchoring Effect)를 검증한 바 있다. 닷 내리기 효과란 개인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초기에 주어진 값이 준거점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전문가에 의하면 은퇴생활비의 80% 이상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생활비의 20% 이상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합니다”와 같은 사전정보를 주고 일반인의 연금수령 의향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닛 내리기가 연금수령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주소현(2012)은 종신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노후소득 걱정을 덜었다는 긍정적 인터뷰와 종신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 생활비 조달이 어렵다는 부정적 인터뷰를 보여주는 종신연금 광고를 제작하여 프레이밍 효과를 살펴본 결과 프레이밍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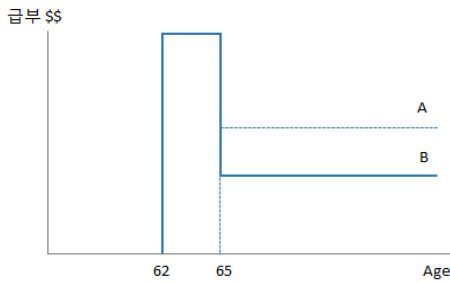
나. 부분 일시금수령

은퇴자들은 은퇴 초기 대규모 생활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일시금과 연금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경우 일시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은퇴 초기 목돈에 대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분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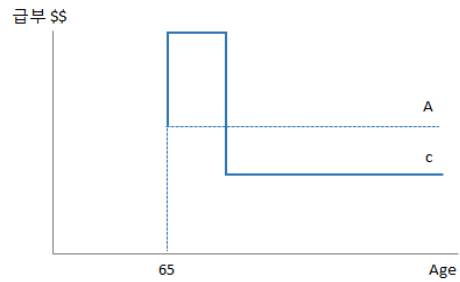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에는 일시금수령 비중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은퇴자는 0%에서 100%까지 자유롭게 일시금수령 비중을 선택할 수 있다. 의무연금화 제도를 폐지한 영국도 미국과 유사한 방향의 제도로 이행하였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적립금의 최대 25%까지 일시금수령을 허용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펀드에 따라 최대 50%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부분 일시금수령이 불가능하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후후박형(High-low Income Streams) 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전후후박 연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개시 전 은퇴하는 경우 국민연금수령 가능시점인 65세까지 높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고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는 낮은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전후후박형 연금은 국민연금이 이미 개시된 경우 초기 5년에서 10년간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데 이후 낮은 연금수령액이 초기 높은 연금수령액의 75% 수준을 하회할 수는 없다.

〈그림 III-3〉 High-Low 옵션 1



〈그림 III-4〉 High-Low 옵션 2



자료: Huitron(2014)

한편 칠레와 싱가포르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제도(Free-disposal Surplus)를 운영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70%를 상회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또한 55세에 지정된 금액 이상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일시금수령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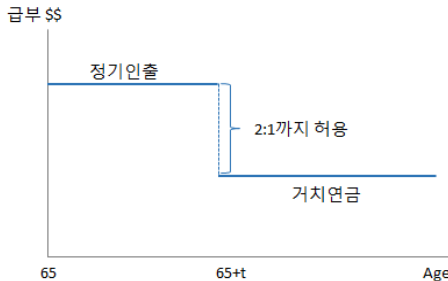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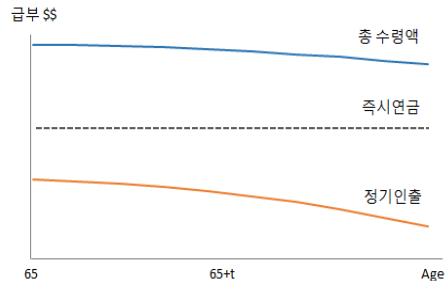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부분 일시금수령을 허용하는 경우 일시금 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일시금 비중을 25% 또는 30%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Beshear(2014)는 최적 부분 일시금 비중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일시금 100% 또는 0%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최적일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 다양한 수령 방식

호주의 경우 일시금, 확정연금, 종신연금 상품 등의 혼합수령이 가능하고 정기인출 상품(Phased Withdrawal), 변액연금 상품 등의 수령 방식 선택도 가능하다. 실제로 80% 이상의 은퇴자가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하는 자유투자계정(Allocated Income Stream) 상품을 선호하며 이는 동 상품의 인출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연금상품이 수령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변액연금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하는 인플레이션 연금도 제공되며 고령에 연금이 개시되는 고연령거치연금 등도 제공되고 있다. 영국은 일시금, 연금, 정기인출(Income Drawdown), 유연한 정기인출(Flexible Drawdown) 등의 수령 방식이 제공

되며, 연금상품에는 종신연금, 확정연금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좋지 못한 생활습관이 있는 경우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증액연금, 투자형 연금 등도 제공된다. 영국은 2015년 의무연금화 제도를 포기한 이후 은퇴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호주, 미국, 영국(연금수령 의무화 폐지 이후) 등의 국가는 장수 위험, 투자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수령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일시금수령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따라서 다양한 인출방식의 제공만으로는 연금수령 비중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연금수령을 일부 강제화하고 있는 칠레,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제한적인 수령 방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칠레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 정기인출(Phased Withdrawal)상품과 즉시연금 또는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을 혼합하여 수령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또한 즉시연금에는 일반 즉시연금과 변액 즉시연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혼합수령 방식은 연금수령을 의무하면서도 은퇴자의 목돈에 대한 니즈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인출과 거치연금을 혼합하여 은퇴초기 인출금액을 65세 이후 은퇴시점 연금수령액의 두 배까지 설정하여 은퇴초기 목돈 지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기인출과 즉시연금의 혼합은 서서히 현금흐름이 감소하는 형태의 현금흐름 생성이 가능하다. 칠레의 사례는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을 강제하거나 디폴트로 설정할 때에도 은퇴자의 목돈에 대한 니즈를 감안한 연금형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5〉 정기인출과 거치연금의
혼합 효과〈그림 Ⅲ-6〉 정기인출과 즉시연금의
혼합 효과

자료: Huitron(2014)

네덜란드는 종신연금수령이 강제화되어 있고, 종신연금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안한 인플레이션 연금, 투자형 종신연금 등이 제공된다. 싱가포르 또한 적립금의 인출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에 도달하면 적립금 중 최소유지금액(Minimum Sum Scheme)을 제외하고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며, 일시금 인출 후 남은 적립금으로 62세에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Standard Plan과 90세까지 정기인출하고 90세 이후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Basic Plan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은퇴자들은 연금시장 또는 CPF(Central Provident Fund)에서 종신연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한데, CPF의 종신연금은 정부가 수익률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 싱가포르에는 투자형 연금상품은 제공되지 않는다. 스위스는 종신연금과 일시금 또는 혼합상품만을 허용하며 거치연금, 투자형 연금, 정기인출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덴마크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정기인출, 변액연금, 일시금 등의 지급방식을 제공하며 이들을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세제지원

수령 방식 선택에 있어 세제지원은 매우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다. 일시금수령 시 세제패널티가 매우 높아 연금수령의 세제 유인이 큰 경우 반강제적으로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15년 이전 퇴직연금 적립금의 75%에 대해 일시금으

로 수령할 경우 18,000파운드 초과분에 5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연금수령을 강제하였으나 2015년 이후 의무연금수령 제도를 폐지하면서 종신연금수령 비중은 종전의 94%에서 10%로 급감하였다.⁸⁾ 또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기인출(Drawdown)을 통해 순차적으로 수령하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영국은 의무연금수령 제도를 포기하였지만 현재의 과세체계하에서도 일시금 인출에 대해 낮은 실효세율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시금수령 유인이 낮다고 판단된다.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에도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일시금수령 시 부담이 발생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대규모 일시금수령 시 패널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연금수령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뉴질랜드나 호주는 수령 방식에 따른 세제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의 세제유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2〉 각 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 시 세제

국가	연금소득	일시금
영국	소득세	소득세(25% 한도 비과세)
스위스	소득세	소득세
미국	소득세	소득세
호주	60세 이상 모든 퇴직급여 비과세	

자료: 류건식 · 김동겸(2015)

마. 사적연금 적립금의 이탈 방지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이직 혹은 퇴직 시 1974년 도입된 전통형 IRA 계좌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전한다. IRA 가입자는 59.5세가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가입자가 59.5세가 되기 이전 조기인출하는 경우에는 연방소득세를 납부하고 10%의 조기인출 패널티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8) 정원석(2017)

다만 최초 주택구입, 고등교육비, 고액 의료비 등의 경우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미국의 전체 퇴직연금 자산 중 IRA의 비중은 1/4정도로 매우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적립금이 해지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⁹⁾

일본에서는 개인형 확정각출연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금운영의 주체로 ‘국민연금기금연합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6개월 내에 IRA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에 자산 이전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적립금이 자동으로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이관되어 관리되며, 이관된 적립금은 중증의 장애 및 사망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히 중도인출이 금지되고 있다.¹⁰⁾

2. 설문조사 결과

가. 부분 일시금수령

본 보고서는 연금수령 유도를 위한 해외사례 중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험연구원에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2,2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¹¹⁾ 성별로는 남성 1,092명, 여성 1,108명이며, 미혼자와 기혼자가 각각 455명, 1,745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각각 357명, 393명, 461명, 446명, 543명이다. 사적연금 가입자의 행동요소 변화방안은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은퇴 시 연금수령 또는 일시금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선호도를 조사한

9) 강동수 외(2014)

10) 류건식 · 이상우(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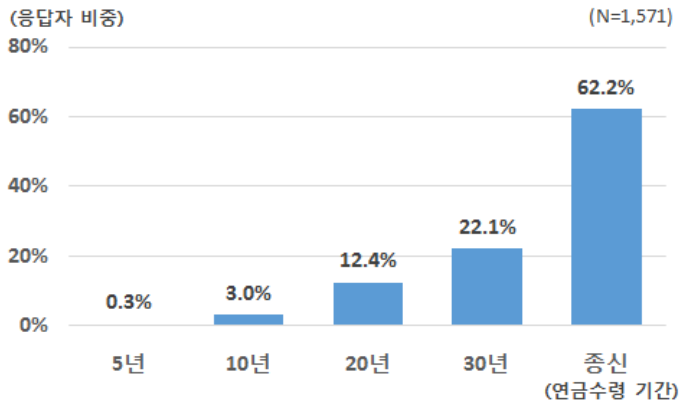
11)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부록에 수록함

결과 80.5%의 응답자가 연금수령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9.5%만이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선택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6)이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한데, 동 설문조사 결과 퇴직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연금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은퇴자의 일시금수령 선호현상과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연금수령을 선호하는 설문 결과는 많은 응답자들이 연금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은퇴 이전에 고려하지 못한 일시금 인출 니즈가 은퇴시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문대상을 은퇴자에 한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다양한 연령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은퇴자의 대다수가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시금수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과 관련한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행동요소 변화방안이 실제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사적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연금수령을 선택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종신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0년 이상 장기의 연금수령을 원하는 비중이 96.7%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현재 의무연금수령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경우보다 장기의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하도록 할 경우 변경할 유인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7〉 연금선호 응답자의 선호 연금수령 기간



설문조사 결과 일시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는 전체 2,200명 중 19.5%인 429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및 성별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은퇴시점이 도래했다고 가정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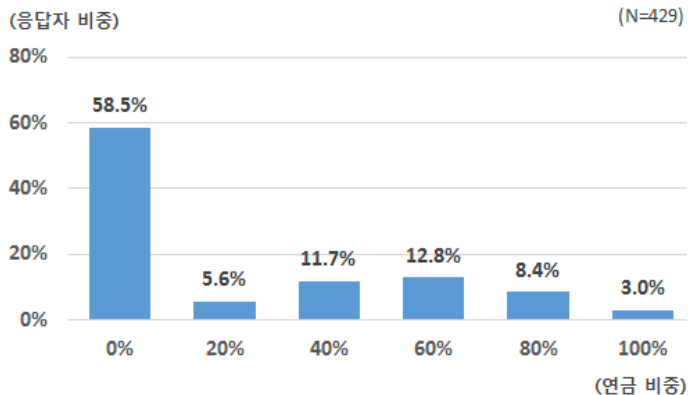
〈표 Ⅲ-3〉 일시금 선호 응답자 특성 분포

특성		명 수	비중(%)
성별	남자	233	54.3
	여자	196	45.7
	계	429	100.0
연령	20대	99	23.1
	30대	69	16.1
	40대	84	19.6
	50대	89	20.7
	60대 이상	88	20.5
	계	429	100.0
혼인 여부	미혼	308	71.8
	기혼	121	28.2
	계	429	100.0

먼저 부분 일시금수령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응답자 429명에게 연금과 일시금을 20% 단위로 혼합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연금수령 비중을 선택하게 하였다. 설문결과 58.5%의 응답자가 여전히 100% 일시금수령을 선택하였으나 나머지 41.5%는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수령을 선택하였다. 연금 비중은 40%와 60%가 각각 11.6%, 12.8%로 나타나 은퇴자산 절반 정도의 연금화가 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수령 시의 평균연금비율은 23.2%로 연금수령과 일시금수령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에 비해 연금과 일시금 혼합수령을 유도하는 경우 연금수령 비중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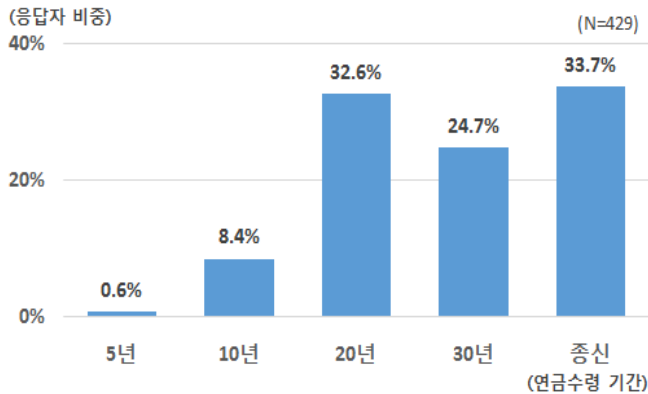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수령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은퇴자가 일부 일시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보험의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인출 뒤 일정 기간 내에 일부분을 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수령을 선택하도록 은퇴자에게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결과는 은퇴 시점에서 연금과 일시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수령 방식을 은퇴자에게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은퇴자의 연금 비중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8〉 부분 일시금 선택 시 연금선택 비중



한편, 부분 일시금수령으로 선택을 변경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종신과 20년이 33.7%, 32.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년 이상 기간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가 91.0%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장기 연금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9〉 부분 일시금 선택 시 선호 연금수령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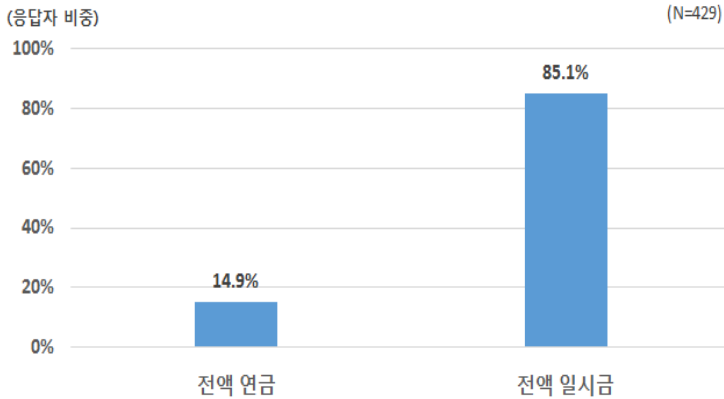


나. 디폴트 연금수령

다음은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응답자 429명에게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일시금수령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질문함으로써 디폴트 연금수령의 효과를 살펴보았다.¹²⁾ 설문 결과 14.9%의 응답자가 수령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전액 연금수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폴트 연금수령 방식 또한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연금수령 유도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연금을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디폴트 연금수령에 대해 일시금수령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함

〈그림 Ⅲ-10〉 디폴트 연금수령하의 연금선택 비중



다. 프레이밍

다음은 연금수령 선택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수령 선택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문장을 읽도록 한 후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수령 비중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프레이밍 효과를 살펴보았다. 응답자에게 제시한 문장은 아래 박스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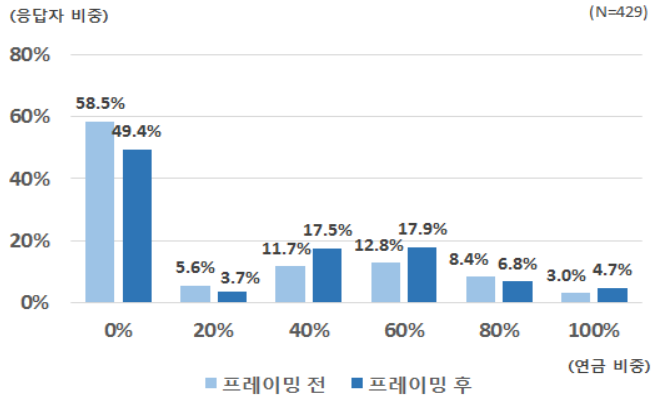
■ 연금 선택의 장점 설명 ■

2015년 현재 55세 남녀의 기대여명은 각각 81.5세, 86.6세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의료비 증가 등 노후지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모두 일시금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증가 등 노후지출에 대응할 수가 없고 노후빈곤 가능성이 커집니다.

설문 결과 단순히 연금과 일시금을 혼합수령하도록 한 경우에 비해 프레이밍 전략을 사용한 경우 연금수령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일시금수령을 고수한 응답자 비중도 58.5%에서 49.4%로 9.1%p 감소하였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연금수령 비중인 연금 40% 수령과 연금 60% 수령 비중도 각각 6.0%p, 5.1%p 증가한 17.5%, 17.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28.6%의 연금수령 비중을 보였으며 프레이밍 효과가 없을 때에 비해 5.4%p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은퇴자가 사적연금수령 방식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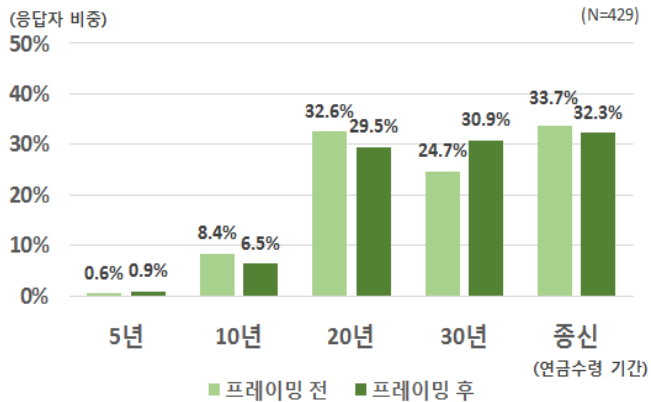
할 때 연금수령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수령의 부정적인 효과를 교육함으로써 연금수령 비중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11〉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선택 비중 변화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20년 이상의 수령 기간을 선택한 비중은 91.0%에서 92.6%로 1.6%p 증가했으며, 30년 이상의 수령 기간을 선택한 경우도 58.4%에서 63.0%로 4.6%p 증가하였다.

〈그림 Ⅲ-12〉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수령 기간 비중 변화



라. 집단 특성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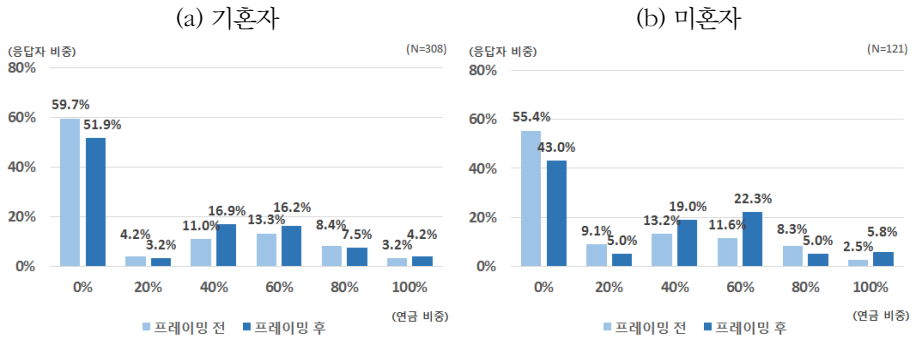
1) 혼인 여부

일시금수령을 선택한 429명의 응답자 중 기혼인 응답자는 308명으로 미혼인 응답자 121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기혼 응답자와 미혼 응답자 중 일시금을 선택한 비중은 각각 17.7%, 26.6%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혼인 경우 본인 이외의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노후소득에 보다 관심이 많을 수 있고, 기혼인 경우 은퇴 후 자녀의 학비, 결혼 비용 등의 대규모 지출로 인한 일시금 선호가 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집단에 대해 연금과 일시금을 혼합수령하도록 한 경우 기혼자와 미혼자의 연금 선택비중은 각각 23.2%, 23.1%로 나타나 혼인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호하는 연금기간의 경우에도 기혼자와 미혼자가 각각 평균 28.1년, 28.7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¹³⁾ 디폴트 옵션의 경우 일시금으로 변경하지 않는 비중이 기혼자와 미혼자 각각 14.3%와 16.5%로 미혼자의 경우가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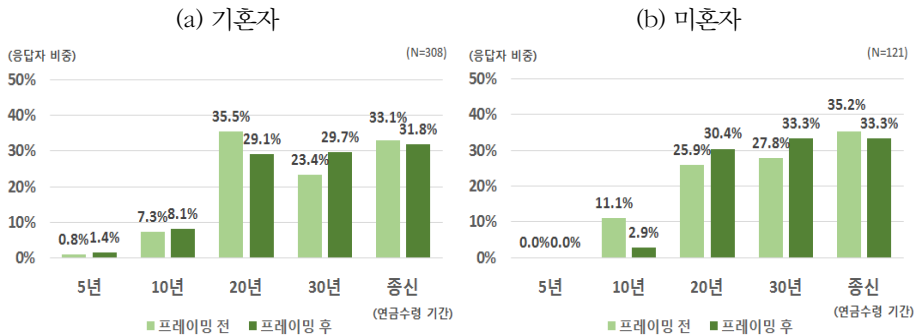
그러나 프레이밍 효과는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 차이를 보인다. 연금수령 선택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수령 선택의 부정적인 효과를 선명한 후 기혼자의 연금선택 비중은 27.3%로 4.1%p 상승한 반면 미혼자의 연금선택 비중은 31.7%로 8.6%p 상승하였다. 연금수령 기간도 기혼의 경우 28.3년으로 0.2년 증가한 반면, 미혼의 경우 29.7년으로 1.0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자의 경우 프레이밍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1인 가구의 증가 현상과 함께 향후 미혼인 은퇴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4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함

〈그림 Ⅲ-13〉 혼인 여부에 따른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선택 비중 변화



〈그림 Ⅲ-14〉 혼인 여부에 따른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수령 기간 비중 변화



2) 연령

일시금수령을 선택한 429명 응답자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각각 99명, 69명, 84명, 89명, 88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전체 설문대상 중 일시금을 선택한 비중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각각 27.7%, 17.6%, 18.2%, 20.0%, 16.2%로 나타났다. 각각 연령별로 연금과 일시금 혼합수령의 효과를 살펴보면 저연령인 20대와 30대에서는 연금비중이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저연령대보다 높은 약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미 은퇴 이후일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이상의 경우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고민해야 할 시기인 40대와 50대에서 부분 일시금 선택의 효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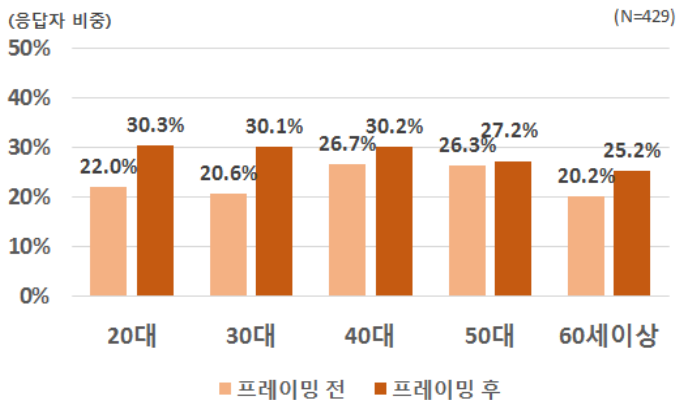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수령 기간에 있어서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디폴트 연금수령의 경우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연금수령 비중이 약 2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30~50대에서 12~13%로 낮게 나타났는데, 부분 일시금과는 반대로 은퇴를 고민해야 할 시기인 40대와 50대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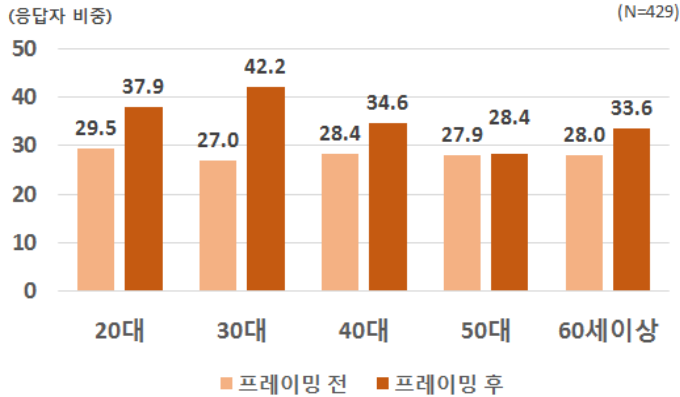
프레이밍을 활용했을 때 연금수령 비중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8.3%p, 9.5%p 상승한 30.3%와 30.1%를 나타내고 있는데, 40대와 50대에서 각각 3.5%p, 0.9%p 상승한 30.2%, 27.2%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저연령에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60대 이상의 경우 5.0%p 상승한 25.2%의 연금비중을 나타냈다. 연금수령 기간에 있어서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8.4년, 15.2년이 증가하여 40대, 50대, 60대 이상 각각의 6.2년, 0.5년, 5.6년에 비해 저연령에서의 프레이밍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은퇴를 고려할 연령인 중년의 일시금 선호도는 부분 일시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프레이밍 효과는 저연령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를 앞두고 수령 방식을 고민하는 시기에는 부분연금의 효과가 클 수 있고, 저연령의 경우 지속적인 연금교육이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Ⅲ-15〉 연령별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선택 비중 변화



〈그림 Ⅲ-16〉 연령별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수령 기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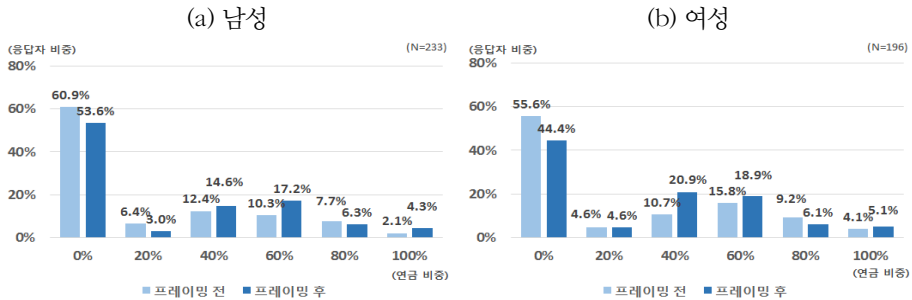
3) 성별

일시금수령을 선택한 429명의 응답자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233명, 196명으로 남성이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전체 설문 대상 중 일시금을 선택한 비중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1.3%, 17.7%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에 대해 부분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의 혼합수령 시의 평균연금비율은 각각 20.8%, 26.1%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에게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의 경우에는 남성이 평균 34.9년으로 여성의 31.4년보다 3.5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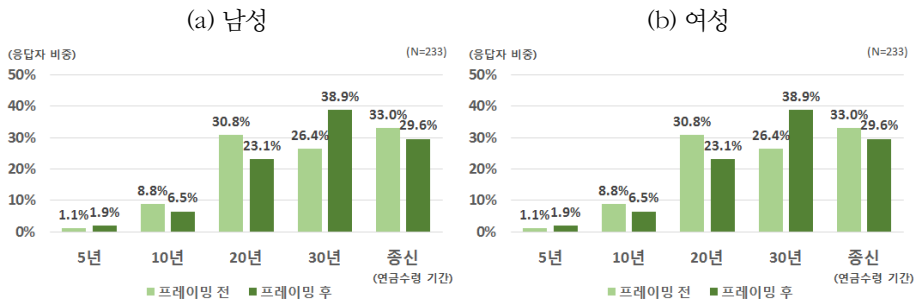
디폴트 연금수령의 경우 일시금으로 변경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한 비중은 남성과 여성 각각 14.6%와 15.2%로 여성의 경우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호하는 연금 기간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각각 평균 28.2년, 28.4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프레이밍을 활용하는 경우 연금수령 비중은 남성이 26.9%로 6.1%p 상승하였고 여성이 30.6%로 3.7%p 상승하여 프레이밍 효과는 남성에서 크게 나타났다. 연금수령 기간의 경우는 남성이 28.9년으로 0.7년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28.6년으로 0.2년 증가하였다.

〈그림 Ⅲ-17〉 성별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선택 비중 변화



〈그림 Ⅲ-18〉 성별 프레이밍 전후의 연금수령 기간 비중 변화



마.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설문조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시금수령을 선호했던 응답자에게 연금과 일시금 혼합수령 비중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을 때 평균 연금수령 비중은 23.2%로 나타나 연금과 일시금을 혼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연금수령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분 일시금 선택의 긍정적인 효과는 프레이밍을 사용하였을 때 연금수령 비중이 28.6%로 증가하면서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레이밍으로 인해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도 소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적연금 가입 시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설정하는 경우, 일시금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14.9%가 수령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 결과 세 가지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들은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들 방안을 사적연금 제도에 종합적으로 적용하

여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 활용 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혼인 경우에 행동요소 변화방안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은 본인 이외의 소득원이 없어 노후소득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20대 또는 30대의 저연령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적 연금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연금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수령 선호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여성의 경우 부분 일시금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노후소득 니즈가 발생하므로 여성에 있어서 혼합수령 시의 평균연금비율이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례 설문조사에 10개의 문항만을 추가하여 실시한 설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설문대상을 은퇴 직전인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이 실제 사적연금 적립금의 수령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못했다. 둘째, 프레이밍 효과 분석 시 비교군과 대조군을 나누어서 비교군에만 연금선택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 선택의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분석 방법일 것이나 정례 설문조사의 특성상 동일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반복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소 타당성이 낮을 수 있다. 셋째, 은퇴자의 수령 방식 선택에는 은퇴자산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은퇴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은퇴자산의 규모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노후소득의 유의미할 정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은퇴자산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고 설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감안할 수 없었다. 은퇴자산이 충분히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구분하여 설문을 하였을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설문에서 고려한 부분일시금, 디폴트 연금수령, 프레이밍 등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의 효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사적연금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1. 연금수령 의무화에 대한 평가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의무화 또는 일시금수령비율 제한 등의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연금수령 의무화 국가였던 영국이 2015년 연금수령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현재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연금수령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연금수령 의무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칠레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일부 일시금 지급 허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Bockweg et al, 2016) 각 국가의 특수성도 존재한다.

또한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도 변경은 가입자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 의무화 이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려는 가입자 급증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종신연금의 경우 저금리 지속과 기대수명 연장이 보험료에 반영되어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다고 느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신연금 가입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는 연금수령 의무화나 일시금수령 비중 제한과 같은 강제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보다는 현재와 같이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연금수령을 확대하고 보다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한다.

2. 대응방안

가. 디폴트 연금수령과 부분 일시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지정하는 것과 수령단계에서 부분 일시금 선택을 명시적으로 제공할 경우 일시금수령 선호자의 연금 선택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지정한 경우 전액 일시금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14.9%가 선택을 변경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ockweg(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20% 단위로 부분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평균 연금수령 비중이 23.2%로 나타나 연금수령 유도에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디폴트 연금수령과 부분 일시금 두 가지 방안을 혼합하는 전략을 통해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입단계에서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지정한 후, 수령단계에서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액 연금을 수령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은퇴자에게는 다시 일시금 비중 20~100%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일부의 적립금이라도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중 두 가지 방안의 효과를 혼합해보면 먼저 디폴트 연금수령으로 인해 연금을 선택하게 된 14.9%의 은퇴자가 있고 나머지 85.1%가 부분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평균 연금수령 비중이 23.2%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34.6%의 연금수령 비중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인 이외의 소득원이 없어 노후소득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와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노후소득 니즈가 발생하는 여성에게 효과가 크다는 점도 동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의 장점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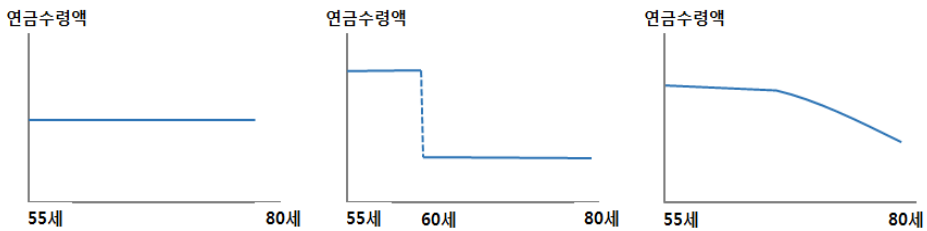
디폴트 연금수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퇴법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디폴트 연금수령의 도입 취지는 은퇴자가 사적연금수령 방식 선택 시 은퇴 직후 발생하는 목돈 지출에 더 큰 비중을 둬으로써 일시금을 선호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디폴트 연금수령 도입 대신 스위스의 경우처럼 사적연금수령 방

식 결정을 조기에 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은퇴자가 연금과 일시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분 일시금 인출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은퇴자의 불편함이 있을 뿐 전액 일시금 인출 후 특정 기간 내 일부를 다시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부분 일시금을 지정된 퍼센트 단위로 은퇴자가 명시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부분 일시금 비중을 스스로 설정하는 과정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금 인출 비중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금수령 유도에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경희(2011)는 미국 Federal Thrift Saving Plan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 연금과 일시금만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04년부터 부분연금방식을 도입한 이후 적립금 일부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 수가 60% 증가하고 연금으로 수령된 적립금 규모도 크게 증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할 경우 은퇴자의 수령 방식 선택은 연금상품의 만족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은퇴 시 일시금수령에 대한 니즈가 크기 때문에 은퇴초기 목돈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해야 하는 정액형 연금상품 구조는 은퇴자에게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하더라도 사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상품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려 가능한 연금상품은 은퇴초기 높은 수령액을 지급받고 일정기간 이후 낮아지는 전후후박형 연금, 연금수령 시점부터 연금수령액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체감형 연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금상품은 은퇴초기 목돈 지출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연금수령에 대한 은퇴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연금상품은 보험회사나 주택연금제도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1〉 연금수령액 예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의무수령 기간은 5년으로 매우 단기이며, 은퇴자가 5년 확정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면 위와 같은 형태의 연금상품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초기 수령액 증액 기간을 의무연금수령 기간인 5년으로 설정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수령 시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연금수령 기간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프레이밍과 지속적인 연금교육

설문조사 결과 연금선택 시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 선택 시의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한 후 연금수령 비중을 선택하게 하는 프레이밍 또한 연금수령 유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이밍 사용 시 프레이밍 효과가 없을 때에 비해 연금수령 비중은 5.4%p 상승하였고, 연금수령 기간 또한 28.3년에서 28.7년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연금수령 비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금수령의 장점과 일시금수령의 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 후 은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연금수령 유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20대와 30대의 저연령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연금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수령 선호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금선택 시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 선택 시의 부정적인 효과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Mttola and Utkus(2007)은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보

다 연금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금수령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안정적인 가입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은퇴시점에서 예상되는 적립금 규모의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연금수령 유도가 가능할 것이다.

다. 세제지원을 통한 연금수령 기간 장기화

1) 개인연금 가입 시 의무 연금수령 기간 선택

우리나라의 개인연금과 개인형 IRP의 추가납입 분은 적립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일시금수령에 강한 패널티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연금과 개인형 IRP의 추가납입 분은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연금수령 유인보다는 연금수령 기간의 연장을 목표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인연금법안에 따르면 기존 10년으로 정해져 있던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의무 연금수령 기간의 변경보다는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의무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개인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한도로 13.2%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현재 의무 연금수령 기간인 10년을 기준으로 보다 장기의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한 가입자에게 더욱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연금수령 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10년보다 짧은 5년의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가입자가 가입시점에서 본인의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 등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11.2%, 13.2%, 15.2%, 17.2% 등으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재정적인 부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가입자들이 본인의 연금수령 기간에 대해 가입시점에서 고민하도록 함으로써 스위스의 사례와 같이 조기선택에 따른 가입자의 태도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수령 시 의무 연금기간 선택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의무 연금수령 기간이 5년으로 매우 단기인 점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 개인연금에서 제시된 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의무 연금수령 기간 선택에 따라 세제혜택 차등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일시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퇴직소득세 경감 수준을 퇴직연금 가입자의 의무 연금수령 기간 선택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연금수령 유도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기간의 장기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 시점에서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 등으로 선택하는 경우 각각 퇴직소득세의 70%, 60%, 50%, 40% 수준으로 세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장기연금수령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경감에 따른 재정부담은 일시금수령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상향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시금수령 시 실효 퇴직소득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장기 연금수령 시 추가적인 세제유인을 제공하는 경우 연금수령 비중을 확대함과 동시에 연금수령 기간도 연장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 적립금 유출방지와 수익률 제고

앞서 살펴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들은 사적연금의 가입단계와 수령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사적연금의 적립금이 축적되는 적립단계에서도 장기연

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립금 유출방지 및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시금수령 계좌의 적립금은 연금수령 계좌의 적립금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적립단계에서 적립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여 총 적립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 또한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에 있어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각 사적연금 제도별로 요구되는 적립단계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 DC형 퇴직연금 노후소득 맞춤형 자산운용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투자성가에 따라 적립금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펀드(TDF: Target Dated Fund)와 같이 소득목표에 따른 자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직장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운용전략이 유지될 수 있도록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의 자산운용 연계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개인연금 유지율 제고

개인연금의 유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계약을 장기 유지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개인연금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 금액에 대한 반납과 함께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패널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 계약의 장기 유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 유지 시 유지비용 경감, 이자율 상향, 포인트 제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유지비용 경감은 사업비를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상품에 대해 유지 기간별로 유지비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지비 부담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개인연금 가입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기 유지 계약자에게 추가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계약 후 얼마 되지 않은 계약자가 낮

은 공시이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해지 환급금보험의 구조와 유사하게 조기 해지하는 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제공한 이자 중 일정부분을 장기유지계약자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유지 계약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그룹에 속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회사가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¹⁴⁾ 이러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장기 유지자에게 동일 금융회사나 금융그룹 내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타 업권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유지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는 상품의 재구매에 사용되므로 포인트 발행 비용은 마케팅 비용에서 조달할 수 있고, 타 업권과의 제휴를 통해 타 업권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개인형 IRP 중도인출 제한

사적연금 중 개인형 IRP는 특히 중도 해지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개인형 IRP의 중도해지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의 중도인출 요건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지에 대해서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실정이다. 개인형 IRP의 적립금 증대를 위해서는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의 기여를 통해 근로자의 은퇴자산을 형성하는 구조이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엄격히 규제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직과 퇴직에 따라 적립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엄격한 중도해지 금지는 유지되며, 이것이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과도 상응한다고 생각된다.

14) 김세중(2017)

V.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제도는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수령이 일반적이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의무 연금수령 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되더라도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한계를 가진다. 한편 사적연금 적립금의 수령 방식 선택에는 적립금 규모가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형 IRP의 중도해지와 개인연금의 낮은 유지율 등으로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도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세제지원 이외에도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령 방식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요소 변화방안 등을 도입하거나 은퇴시의 목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흐름 제공 등이 그것이다. 이중 행동요소 변화방안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논의된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며, 상대적으로 실행에 부담이 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방안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디폴트 연금수령, 부분 일시금 선택, 연금수령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수령의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수령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프레이밍 등의 행동요소 변화방안들이 결합될 경우 일시금수령 선호자의 연금수령 유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 여부, 연령,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노후소득의 필요성이 큰 미혼자와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여성에 대해 효과가 크고, 저연령에 대한 교육 효과도 크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입단계에서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지정한 후, 수령단계에서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액 연금을 지급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은퇴자에게는 다시 일시금수령 비중 20~100%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일부의 적립금이라도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폴트로 선택되는 연금상품에 대해서도 은퇴 시 목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 수령액을 크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연금상품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령단계에서 부분 일시금 비중 선택 시 연금수령의 장점과 일시금수령의 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 후 은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연금수령 유도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금수령 기간 장기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일시금수령에 비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확대할 경우 연금수령을 선택하는 은퇴자는 증가할 것이나 이에 더해 연금수령 기간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하여 연금수령 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자가 가입시점에서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 중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수령단계에서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 연금수령 시 일시금수령 대비 퇴직소득세를 경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적립금 유출방지와 수익률 제고방안 도입이다. DC형 퇴직연금의 생애주기 펀드 활성화 및 개인형 IRP와 자산운용 방식 연계, 개인연금 장기 유지자에 대한 수수료 경감 및 추가 이율 제공, 포인트 제공, 개인형 IRP의 중도인출 제한 등의 세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적연금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정리하면 <표 V-1>과 같다. 사적연금을 DC형 및 DB형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개인연금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계 등 모든 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제시한다.

〈표 V-1〉 사적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제고방안

구분	가입	적립	수령
DB형	디폴트 연금수령	예상 연금수령액 정보 제공	• 소득흐름에 맞는 연금상품 추가 • 부분일시금 + 행동요소 변화 • 연금수령 기간별 세제지원 차등화 (퇴직소득세의 70%, 60%, 50% 등)
DC형		소득목표에 따른 자산운용(TDF 등)	
개인형 IRP	최소 연금기간 선택, 세제혜택 차등 (5, 10, 20년, 종신)	해지 패널티 부과	
개인연금		유지 인센티브 (수수료 경감, 추가 이자, 포인트 지급)	-

참고문헌

- 강동수 외(2014),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고용노동부(2012), 『연금제도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 방안 연구』
- _____ (2016a), 『15년 퇴직연금 주요동향』
- _____ (2016b),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_____ (20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금융감독원(2017), 『2016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 김대환·오병국(2011),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김세중(2017), 「보험회사의 포인트 제도 활용 방안」,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 류건식·이상우(2009),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KiRi Weekly』
- 류건식(2014),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류건식·김동겸(2015),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보험동향』, 보험연구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6),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
- 류건식(2017),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과 과제」,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
- 보험개발원(2014),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 현황 분석」
- 신승희·손현섭·이항석(2014), 「생존기간을 고려한 생애소득대체율의 추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5권, 6호
- 오영선(2014), 「개인연금 상품가입 및 채널선택 요인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이경희(2011),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 이태열·류건식(2017),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의 원인과 개선 방안」, 『KiRi 고령화리뷰』, 제5호
- 자본시장연구원·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2015),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 효율

적 관리 방안 연구』

정세창(2012), 「퇴직급여 현황과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권, 6호

정원석(2017), 「영국의 퇴직연금 세제 변화에 따른 적립금 수령행태와 시사점」,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주소현(2012), 「연금화 의사결정과 앵커링」,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주소현 · 윤재민(2014), 「연금화 의사결정과 닷 내리기 효과」, 『소비자학연구』, 25권, 5호, 한국소비자학회

한국개발연구원(2014),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한국조세정책연구원(2013),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Agnew, Julie, Lisa Anderson, Jeffrey Gerlach, and Lisa Szykman(2008), “Who Chooses Annuitie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Gender, Framing and Defaults”, *American Economic Review*, 98(2)

Asher, M.(2013), “Singapore CPF: A Sustainable and Fair Solution to the Country. Pension Challenge?”, Technical repor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Beshears, J., Choi, J. J., Clayton, C., Harris, C., Laibson, D., and Madrian, B. C. (2014), “Optimal Illiquidity in the Retirement Savings System”, NBER Retirement Research Center Paper, No. NB 14-05

Bockweg C., Ponds E., Steenbeek O. and Vonken J.(2016), “Framing and the Annuitization Decision: Experimental Evidence from a Dutch Pension Fund”, Netspar Discussion Paper, No. 03/2016-007

Brown, J. R.(2001), “Private pensions, mortality risk, and the decision to annuitiz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82(1,Oct)

Butler, M. and Teppa, F.(2007), “The choice between an annuity and a lump sum: Results from Swiss pension fun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10)

- Huitron, G. M.(2014), “The Role of Annuities, Partial Lump-Sums and Special Purpose Withdrawals in Pension Design”, Thesis. NETSPAR and APG
- Mttola and Utkus(2007), “Red, Yellow, and Green: A Taxonomy of 401(k) Portfolio Choices”,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 OECD(2016), “Pension at a glance”
- Rocha, R., Vitas, D., and Rudolph, H. P.(2011), “Annuities and Other Retirement Products: Designing the Payout Phase”, Number 2272 World Bank Publications

부록 I. 행동변화 요소 효과 설문 문항

문58. 귀하께서는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DB형 ② DC형 ③ IRP ④ 없음

문59. 55세 은퇴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연금 ➡ 문60번으로 ② 일시금 ➡ 문61번으로

문60. (문59의 ① 응답한 경우만) 연금을 선택할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년 ② 10년 ③ 20년 ④ 30년 ⑤ 종신

문61. (문59의 ② 응답한 경우만) 55세 은퇴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과 일시금을 혼합해서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선택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십니까?

- ① 0%(전액 일시금) ➡ 문62번으로 ② 20% ③ 40%
④ 60% ⑤ 80% ⑥ 100%(전액 연금)

문61-1. (문61의 ②~⑥ 응답한 경우만)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할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년 ② 10년 ③ 20년 ④ 30년 ⑤ 종신

문62. 55세 은퇴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전액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 방식을 변경하시겠습니까?

- ① 변경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한다
② 변경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 연금선택의 장점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고 다음 질문에 응답 바랍니다.

▣ 연금 선택의 장점 설명 ▣

2015년 현재 55세 남녀의 기대여명은 각각 81.5세, 86.6세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의료비 증가 등 노후지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모두 일시금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증가 등 노후지출에 대응할 수가 없고 노후 빈곤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63. 귀하께서는 연금 선택의 장점을 이해하셨습니다.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과 일시금을 혼합해서 선택 가능할 경우 연금선택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십니까?

- ① 0%(전액 일시금)  문64번으로 ② 20% ③ 40%
④ 60% ⑤ 80% ⑥ 100%(전액 연금)

문63-1. (문63의 ②~⑥ 응답한 경우만)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할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 · 박지운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방안 / 이기형 · 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 · 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 · 이태열 · 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 · 이선주 2017.12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중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 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직보험 활성화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정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 ·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점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080 / pgc0703@kiri.or.kr)

저자약력

김 세 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김 유 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연구보고서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72-5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